

FAX시행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 전화(02)720-2014

/ 전송 737-0109

문서번호 국행일 01100-3

시행일자 97. 1.13. (년)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선결			지시	
접	일자 시 간		결	
수	번호		재· 공 람	
	처리과			
	담당자			

제목 「최근 일부 근로자 파업사태」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1997 - 2호)

정부가 근로자와 기업인의 애국애족심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개정을 한 것은 국민전체의 내일을 위한 회피할 수 없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전폭적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점 정부로서 냉정한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된 일부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국가경제의 손실과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기관 노조까지 불법파업에 가세한다면 이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특별지시하니 관계부처장관은 시행에 차질없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랍니다.

< 다음 >

1. 정부는 최근의 일부 근로자들의 파업을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관계부처는 근로자의 자발적 협력의 중요함과 국민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위하여 신중히 대처하되 파업중인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하청업체 및 더 어려운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즉각 산업현장에 복귀토록 설득 종용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

특히 지하철, 버스등 공익사업에서 불법파업을 막도록 하고 끝내 파업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

또한 행정 각부처는 파업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의 대책을 재확인, 점검토록 할 것.

2. 현재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지도부등 일부 노조간부들이 종교시설에 들어가 농성을 하면서 법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임. 국법질서의 확립에 있어 종교시설이 성지가 될 수는 없음.

그러나 정부로서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교회의 특수성을 최대로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법집행을 자제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법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음.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접근을 통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부는 산과 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대원칙을 항상 지키도록 할 것.

그리고 종교단체와 국민들은 법의 형평성과 엄정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나라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의 법질서확립 노력에 다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모든 부처가 힘을 다해 국민, 종교단체에 호소하고 지지를 얻도록 할 것.

3. 또한 최근 일부 해외의 노동단체등이 우리 노동법개정에 대해 편향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안보, 경제적 현실과 노동법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현재와 내일을 위하여 그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의 회생을 이루어 만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밖에 없음.

각부처 및 재외공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해외에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도록 대외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

4. 한편 파업이 지속되면서 일부 노조원들간에 안기부법개정 철회와 나아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투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인 일임.

지난번 한총련사태에서 짚은이들의 이념적 편향을 우려했던 것처럼 노동계지도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들과 더불어 크게 걱정하고 있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것이며, 권위적 정부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음.

현정부는 부족한 점은 많겠지만 과거 어떤 때 보다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진력하여 왔다고 생각함.

그러나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단호할 수 밖에 없음.

북한과 관련된 최근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금년 한 해 국가안보상 각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만큼 안보상의 해이나 내부적 분열책략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에대해 각부처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처토록 할 것. 끝.

국 무 총



수신처 : 가05~54, 나1~18

FAX시행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 전화(02)720-2014

/ 전송 737-0109

문서번호 국행일 01100-3

시행일자 97. 1.13. (년)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 간		
수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최근 일부 근로자 파업사태」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1997 - 2호)

정부가 근로자와 기업인의 애국애족심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개정을 한 것은 국민전체의 내일을 위한 회피할 수 없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전폭적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점 정부로서 냉정한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된 일부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국가경제의 손실과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기관 노조까지 불법파업에 가세한다면 이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특별지시하니 관계부처장관은 시행에 차질없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랍니다.

< 다음 >

1. 정부는 최근의 일부 근로자들의 파업을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관계부처는 근로자의 자발적 협력의 중요함과 국민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위하여 신중히 대처하되 파업중인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하청업체 및 더 어려운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즉각 산업현장에 복귀토록 설득 종용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

특히 지하철, 버스등 공익사업에서 불법파업을 막도록 하고 끌내 파업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

또한 행정 각부처는 파업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의 대책을 재확인, 점검토록 할 것.

2. 현재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지도부등 일부 노조간부들이 종교시설에 들어가 농성을 하면서 법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임. 국법질서의 확립에 있어 종교시설이 성지가 될 수는 없음.

그러나 정부로서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교회의 특수성을 최대로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법집행을 자제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법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음.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접근을 통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부는 산과 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대원칙을 항상 지키도록 할 것.

그리고 종교단체와 국민들은 법의 형평성과 엄정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나라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의 법질서확립 노력에 다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모든 부처가 힘을 다해 국민, 종교단체에 호소하고 지지를 얻도록 할 것.

3. 또한 최근 일부 해외의 노동단체등이 우리 노동법개정에 대해 편향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안보, 경제적 현실과 노동법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현재와 내일을 위하여 그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의 회생을 이루어 만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밖에 없음.

각부처 및 재외공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해외에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도록 대외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

4. 한편 파업이 지속되면서 일부 노조원들간에 안기부법개정 철회와 나아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투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인 일임.

지난번 한총련사태에서 젊은이들의 이념적 편향을 우려했던 것처럼 노동계지도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들과 더불어 크게 걱정하고 있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것이며, 권위적 정부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음.

현정부는 부족한 점은 많겠지만 과거 어떤 때 보다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친력하여 왔다고 생각함.

그러나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단호할 수 밖에 없음.

북한과 관련된 최근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금년 한 해 국가안보상 각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만큼 안보상의 해이나 내부적 분열책략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에대해 각부처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처토록 할 것. 끝.

국 무 총



수신처 : 가05~54, 나1~18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1 / 전화 (02) 737-0096 / 전송 720-2033

문서번호 국행삼 65065 - 1

시행일자 1997. 1. 3. ()

수 신 수신처 참조 (부)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번호		
처리과		결 재 • 공 람	
담당자			

제목 : 「장애인복지시책」'96 실적평가와 '97추진계획"추진철저(국무총리지시제1997 - 1호)

1. '96. 12. 26(목) 개최한 제1차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한 「장애인복지시책 '96실적평가와 '97추진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철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관별로 '97. 1. 10까지 각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97. 1. 20까지 이를 종합·종합하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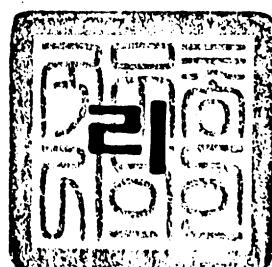
나. 각 부처는 매월 소관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하고, 일선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추진실적도 점검·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

다. 각 부처는 매분기별 추진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이를 종합하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람.

2. 아울러 12. 26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민간위원들의 의견 및 총리지시사항을 함께 보내드리니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람.

- 붙임 : 1. 「장애인복지시책 '96실적평가와 '97추진계획」 1부.
2. 「제1차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국 무 총



수신처 : 가07~가54